24-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

「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」제3장 1절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방산중소기업을 육성하기를 위해 『24-1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4. 2. 20.

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

1 사업 개요

가. 사업목적

해외방산시장 진입촉진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획득, 수출컨설팅, 해외성능시현을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내 방산중소기업 육성

나. 지원규모 : 연간 8개사* 이상

* '23년 연간 12개사 지원

다. 지원범위 : 지원분야별 소요비용의 70%, 정부지원금 최대 3,000만원

※ 지원분야별 내용 (세부 내용은 3페이지 참조)

수출컨설팅

해외목표시장 선정·조사, 수출마케팅 전략수립 등 수출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

해외규격인증

제품 시험·인증 비용, 컨설팅 기관 과제수행 대행료, 공장심사 등 비용 지원

해외 성능시현

수출대상국가 또는 글로벌 방산업체 요청에 따른 해외 성능시현(Demo) 비용 지원

- * 1개 이상 지원분야 신청 가능하나, 정부지원금 한도는 총 3,000만원
- * 정부지원금은 참여기업에게 RCMS(실시간통합연구관리비시스템)를 통해 지급되며,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에 지급
- 라. 사업기간 :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/평가위원회 승인 시, 1년 초과 신청 가능)

※ 주요 용어 정의

- 중소기업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- 참여기업 :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☞ 신청자격 : 2.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

- **수행기관** : 참여기업의 수출지원서비스(해외인증획득, 수출컨설팅, 해외성능시현) 제공기업 ☞ 신청자격 : [참고자료] 참조

- 전문기관 : 방위사업청장이 지원사업에 대한 기획 · 평가 · 관리 및 활용 등의

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(국방기술진흥연구소, 이하 '국기연')

2 신청자격 및 제한

가. 신청자격

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, 구성품, 부품,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

- 1.「방위사업법」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
- 2.「방위사업법」 제35조에 따라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군수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(제조·수리·가공·조립·시험·정비·재생·개량 또는 개조) 활동을 통해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
- 3.「방위사업법」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
- 4. 다음 각 목의 사업에 참여하여 <u>최종평가 결과 '성공'으로 판정된</u> 중소기업 및 절충교역 지침 제14조에 따라 절충교역 협상방안에 포함된 <u>절충교역 유망</u> 품목에 선정된 중소기업(별도 선정위원회 없이 참여기업으로 지원) ☞ **별도 문의**
 - 가.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
 - 나.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
 - 다. 국방벤처 지원사업
 - 라.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

나. 신청제한

- 1. 직전 사업연도까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4회 초과 참여한 기업
- 2.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해외인증획득 지원, 수출컨설팅지원 등 타 정부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
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. 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 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참여 가능
- 4. 휴·폐업중인 기업
- 5.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
- 6.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
- 7.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
- ※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: 「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서 규정하는 해외바이어발굴 지원, 해외인증획득 지원, 수출컨설팅 지원, 해외 성능시현 지원, 기타 해외진출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칭

3 지원 분야 및 내용

가.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

-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, 지역규격, 외국국가규격,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
 - 1. 제품 시험·인증
 - 2.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
 - 3.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
 - 4.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

나.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

-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
 - 1.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
 - 2. 파트너 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
 - 3.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
 - 4. 수출 목적의 계약/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
 - 5. 계약서, 통관/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
 - 6. 법률 자문, 세무 자문,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
 - 7.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

다. 해외 성능시현

-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
 - ※ 지원 횟수 : 연 1회,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(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)
 - ※ 단, 2024. 11. 30.까지 수출대상국 성능시현 완료 및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
 - 1.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
 - 2.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
 - 3.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
 - 4.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
 - 5.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(단,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,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)
 - ※ 해외에서 수행한 성능시현만 인정되며, 해외전시 등 방산행사 참여 시현은 제외
 - ※ 위시항 제5호의 기타 인정 비용은 필요 시 내부위원회 협의 및 심사를 통해 결정 예정 (단, 수행인력 직접경비(항공료, 체제비, 여비 등)는 비용지원 불인정 항목임)
- 지원 품목 :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
 - 1.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물자
 - 2.「전략물자 수출입 고시」의 별표3(군용물자)에 해당되는 품목
 - 3.「전략물자 수출입 고시」의 별표2(이중용도품목)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
 - ※ 지원품목 3. 이중용도품목 중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출서류 목록 9번 (대상품목의 현지 성능시현에 대한 수출 상대국 정부 또는 획득기관으로부터 접수한 공식 요청 문서)에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품목임을 반드시 명기 요망

라. 지원 규모 및 비용 : 총 비용의 70%, 최대 3,000만원 한도

-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.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(VAT)를 제외한 금액
- 정부지원금(70%)과 민간부담금(30%)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
- ※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(30만원)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필요
- 정부지원금 지급 :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을 통해 정부지원금이 사전 지급되며, 사업 특성에 따라 사후 정산 가능
- 지원 기간 :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

4 선정 및 추진절차



- *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* 잔여예산 발생시 2차 모집 예정
- * 세부 평가일정, 안내사항 등은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

가. 선정 및 평가방법

- 1) 지원 자격 검토 : 신청자격,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
- 2) 대면평가 :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평가 진행(필요 시. 현장점검)
- 3) 참여기업 확정 :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
- ※ 종합평점(대면평가점수(100%) ± 우대배점/감점)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방사청 제출(필요시, 현장점검 결과 반영)

나. 대면평가 항목 : 과제수행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구 분	평가 항목
필수사항 검토 (적/부)	1. 참여기업의 자격조건 등
	2. 기 지원 과제와의 사업 중복 참여 여부
	3.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및 제한(해당시)
사업계획 및 역량 (50)	1. 사업목표 및 사업 수행 방법(15)
	2. 사업 추진체계 (역할분담) 및 수행 능력(10)
	3. 품목·수출 경쟁력(25)
시장진출 노력 (25)	1.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(10)
	2. 수출 추진 준비(15)
경영상태 건전성 (10)	1. 영업 이익률(5)
	2. 부채비율(5)
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 (15)	1. 사업비 산정 및 사용계획 적정성(15)

- *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(해당시)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* 대면평가 평점 7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종합평점 산정 및 방사청 관리위원회 상정
- * 평가위원별 평가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, 평가일정 및 결과는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지 예정
- 다. 관리위원회: 대면평가 평점에 우대·감점 기준을 적용한 종합평점을 산정 후 방사청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선정

5 유의사항

가. 지원 우대사항

-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)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평가 시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의 [별표1]선정평가 시 우대·감점 기준에 따라 전체 평가점수의 최대 5%의 범위에서 우대
 - ※ 제출된 증빙자료에 한해 인정하며, 각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가산비율만 적용
 - * 예시
 - ① 우대 점수 :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기업(2% 가산) 등
 - ② 감점: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제재 이력(1.0% 감점) 등

나. 사업 수행

-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 - 1. 유망수출품목 발굴·지원 사업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
 - 2.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
 - 3.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
 - 4.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
 - 5.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.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
 - 6. 사업진행에 따른 진도보고서, 최종보고서, 완료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중간/최종평가 협조

다. 협약 체결

- 참여기업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, 세부사업 추진일정, 수행기관,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 사업 추진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국기연에 제출해야 함
- 확정통보일 또는 사업설명회 개최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
 - ※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라. 협약 내용의 변경

-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에 따라 **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**
 - 1.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
 - 2. 총괄책임자. 협약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
 - 3. 일괄 협약 체결시 정부의 예산 규모, 지원과제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
 - 4.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참여기업은 경영여건 및 해외방산시장 환경의 변화 등으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내에서 변경추진승인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,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

마. 협약의 해약

-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**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**
 - 1. 천재지변, 부도 폐업 회생계획의 불인가 등 지원사업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정부로부터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(해당 사업의 경우)
 - 3. 해외인증획득 지원, 수출컨설팅 지원 등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은 경우(해당 사업의 경우)
 - 4.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5. 정부출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(횡령, 편취, 유용, 타목적 사용 등을 포함한다)
 - 6. 과업수행계획서, 사업추진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
 - 7.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지원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8.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"중단"조치가 내려진 경우
 - 9. 전문기관 및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
 - 10. 진도점검,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
 - 11. 허위,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
 - 12.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
 - 13. 기타 과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이 판단하는 경우

바. 협약의 제재 및 환수조치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음
 - 1. 천재지변, 참여기업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한 경우
 - 2.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
 - 3. 거짓 신청, 관련 문서 위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경우
 - 4. 의무적으로 부담할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거나, 수행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5. 동 운영지침 및 협약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
 - 6. 참여기업이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7. 부정 청탁을 통해 참여기업, 수행기관에 선정되거나 서비스를 수임한 경우
 - 8. 도덕적 해이 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
- 지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
 - ※ 보관 자료는 「감사원법」제25조에 따른 계산서,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함
- 위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및 기준은 방위사업청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따름

6 신청기간 및 방법

가. 신청기간 : '24. 2. 20.(화) ~ 4. 3.(수)

나. 신청방법 : 전자우편 접수 ※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

※ export01@krit.re.kr 으로 이메일 제출

다. 접 수 처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

라. 신청서류 : [붙임 1] 제출서류 목록 참조

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하는 서비스(해외인증획득, 수출컨설팅)를 제공할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(/참고자료 2/ 참조)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

마. 전자파일(hwp, PDF 등) 이메일 제출시 유의사항

참가신청 공문을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PDF 형식으로 개별파일 저장 후 압축해서 제출

- * A4 크기로 PDF 저장 및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제출
- *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"원본과 상위 없음"을 확인한 후 제출 신청서류 중 지원사업 신청서(사업추진계획서 포함)는 한글파일도 제출
- * 추후 원활한 사업추진계획서 관리를 위해 HWP 형식 준수 요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, 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출 시 메일제목 및 파일명 준수
- * 메일제목 : "업체명 24-1차 참여기업 지원(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컨설팅 또는 해외 성능시현)"
- * 압축파일: "업체명_24-1차 참여기업 지원(해외인증획득 또는 수출컨설팅 또는 해외 성능시현).zip"
- * 개별파일: "업체명_서류순번.신청서류명.pdf"

※ 단계별 확인 내용

단 계	주 요 내 용
사업신청 자격 사전 검토	○「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」(훈령 제737호, 2022. 6. 2.) 제42조에 따른 지원자격 해당여부 등 (2페이지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) -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, 구성품, 부품,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☞ [붙임 1] 제출서류 목록의 ③ 서류 제출
<u> </u>	
수행기관 선정 및 신청서 작성	○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 분야(해외인증/수출컨설팅/해외 성능시현) 선택 ○ 필요시 서비스 분야를 제공하는 수행기관 선정 및 견적서 확보 등 ☞ 수행기관 자격은 [참고자료 2] 참조 ☞ [붙임 1] 제출서류 목록의 ⑩ 서류 준비 제출 ○ 사업 목적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서 등 작성 -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견적서 등 제출 필요
\Box	
신청서 제출 및 확인	○ 전자우편(export01@krit.re.kr)으로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(055-751-4896, 4918) 필수
Û	
선정평가 준비	○ 대면 평가위원회 참석 및 사업추진계획서 등 발표 (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, 5~6페이지 선정 및 추진절차 참조) - 평가항목은 [참고자료 1] 참조
Ţ	
협약체결	 방위사업청 관리위원회 결과 통보 후, 사업추진계획서 등 보완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 체결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(협약 이전에 진행된 서비스는 지원 불가) RCMS를 활용한 정부지원금 지급 예정
Û	
진도점검 및 후속조치	○ 협약일로부터 2분의 1이 되는 날까지 지원서비스의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내용 작성 - 진도보고서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
Û	
최종평가 및	○ 대면 평가위원회 참석 및 사업추진결과 등 발표 - 최종평가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「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」규정 참고 -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실적 보고서 양식은 별도 안내 예정

7 기타 사항

- 가.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「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」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「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운영규정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* 공고 마감일 기준 최신규정 적용
 - *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 행정규칙)
 - * 방위사업청 홈페이지(www.dapa.go.kr 업무·정책 법령 행정규칙 훈령)

나. 연락 및 문의처

<국방기술진흥연구소>

1)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, 1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

2) 담당부서 : 수출지원팀 055-751-4896, 4918

- e-mail: export01@krit.re.kr

다.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

- /**븥임 1**/ 제출서류 목록
- [븥임 2] 참여기업 신청서
 - ※ 신청서 양식 붙임자료 확인 및 작성 요망
- 그 외 기타 증빙자료

라. 참고 자료

- [참고자료 1] 참여기업 대면평가서
- [참고자료 2] 수행기관 신청자격